

제 317호 · 2015년 7월 29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중국, 「기초시설·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시행 및 민관협력(PPP) 사업 발표

물류정책·사업동향

1. 해협상 타결직후 이란 물류시장으로 눈 돌리는 DP 월드
2. 미국 LA-LB NY-NJ항, 메가선박(Mega-Ship) 입항으로 터미널 혼잡가중
3. DHL, 중국 전자상거래 확대 계획
4. Menlo, 동유럽 Freight Brokerage 서비스 확장

물류시장동향

1. UPS, 중국-유럽간 LCL 서비스 제공
2. 러 태평양 함대 소속 “아드미랄 네벨스코이” 함정, 사할린 지역 첫 운항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중국, 「기초시설·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시행 및 민관협력(PPP) 사업 발표

1. 추진 배경

- 중국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은 지역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세번째 발전단계에 진입함

< 중국의 PPP 사업 발전과정 >

단계	기간	주요 내용
1단계	'80년대 중반~'07년	▪ 주로 BOT 방식을 중국발전소 등 기초시설 분야에 도입 ▪ 주로 외상투자자가 임대차(특허) 사업에 투자
2단계	'08년~'09년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건설사업과 도시 공공사업 분야에 도입 ▪ 외자기업,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두 참여 ▪ BOT와 TOT 방식을 비교적 많이 사용
3단계	'10년~현재	▪ PPP 적용범위가 부동산, 스마트 도시 개발, 국립의료원 개발 등 분야로 확대

자료 : "PPP没有想象的那样简单", 凤凰网财经(finance.ifeng.com), 2014.6.21.

- 최근 수년간 경제 침체 및 전통적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으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음
 - 2014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사회자본 도입 기초설비 건설 시범 80항목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지방정부도 PPP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함
 - 아울러 재정부는 2014년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모델 운영 가이드라인(政府和社會資本合作模式操作指南)」을 통해 공공사업 분야 민관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 2015년에는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시설 건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민관자본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 또한 지난 4월에는 민간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에 대한 특허(concession, 양허)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혁신을 실시함
 - 2015년 4월 25일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The Regulation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Utility Concessions)」¹⁾을

1)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국무원 유관 부처와 각 지방 정부가 제정한 다수의 법규정, 문건에 '특허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정책 및 제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규정에서도 PPP보다는 '특허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

공식 발표했으며²⁾, 201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

- 본 규정의 목적은 기존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초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금융(financing), 시공(construction) 및 운영(operation)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임

2.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³⁾

○ 적용 분야(제2조)

- 본 규정은 중국 국내의 에너지, 교통운송, 수리, 환경보호, 시정공정 등 분야의 기초시설과 공공사업의 특허에 적용됨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의 정의(제3조)

- 국내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권리 및 의무, 리스크 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초시설과 공공시설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동시에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기초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특허는 중국 정부가 입찰경쟁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내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됨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의 특허방식(제5조)

- 건설-운영-이전(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소유-운영-이전(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및 건설-이전-운영(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이 허용됨

< PPP 사업의 운용방식별 주요내용 및 특징 >

구분	내용 및 특징
위탁운영 (Operations and Maintenance)	- 기존 공공시설을 통한 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지나 시설의 운영 및 보호 업무는 민간에 위탁 - 민간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비용회수 불가 - 정부가 민간에 관리비용 지불하며, 계약기간은 8년 이하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 기존 공공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설의 운영 및 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 - 민간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비용회수 불가 - 정부가 민간에 관리비용 지불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하
건설-운영-권리이전 (Build-Operate-Transfer)	-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설계, 용자, 건설, 운영, 시설,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 제반분야를 책임 -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건설 및 운영비용 부담

하기로 했다고 밝힘. 본 규정은 총 8개 장(제1장 총칙, 제2장 특허경영협의 정립, 제3장 특허경영협의 이행, 제4장 특허경영협의 변경 및 종료, 제5장 감독관리 및 공공이익 보장, 제6장 분쟁 해결,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및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2) 규정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함.

3)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국가발전개혁위(www.ndrc.gov.cn), 2015.4.25.

	▪ 시설준공 후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민간 또는 특수목적 회사가 보유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에 이전하며, 계약기간은 20~30년
건설-소유-운영 (Build-Own-Operate)	▪ 기본적으로 BOT와 동일 ▪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에 대한 권리를 계속 확보
이전-운영-이전 (Transfer-Operate-Transfer)	▪ 정부가 기존 공공시설의 권리를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에 양도 ▪ 계약기간 동안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책임 ▪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에 대한 권리를 공공에 이전하며, 계약기간은 20~30년
복원-운영-이전 (Rehabilitate-Operate-Transfer)	▪ 기본적으로 TOT와 동일 ▪ 민간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노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한 후 운영 시작

자료 : 2014년 재정부 《정부 및 사회자본 합작모델 운영 가이드라인(政府和社會資本合作模式操作指南)》 참고 재정리("중국 민관협력 (PPP) 지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 한중 Zine, *In China Brief*, Vol.293, 2015.6.29. 재인용).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의 특허기간(제6조)

- 업종별 특징, 제공하는 공공재 또는 서비스의 수요,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투자회수기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30년으로 규정함
- 단,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가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특허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함

○ 가격 메커니즘(제19조)

- 사업자(concessionaire)가 최종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요금 징수로 건설, 운영비용 및 합리적인 수익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타당성 미달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을 보조 받을 수 있음

○ 자금조달 지원책(제23조~제24조)

- 관련 분야 프로젝트 신용대출 우대 혜택, 프로젝트 기대 수익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프로젝트 관련 여타 수익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 프로젝트 관련 증권, 회사채 발행 및 산업펀드의 설립을 허용함
- 정책개발 금융기구가 차별화된 신용대출 지원을 해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임

○ 사업자의 선정(제17조)

- 국내 자본 및 외국 자본 진입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예를 들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산업 분야별로 장려, 제한 및 금지분야로 구분하여 투자를 유도 및 제한하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허가분야로 분류됨⁴⁾

< 2015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교통, 유통 분야)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장려 분야	철도간선 네트워크의 건설·경영	중국측 다수 지분 허용
	지선철도 및 터미널 시설의 건설·경영	
	항만 공공부두시설의 건설·경영	
	유류(가스)창고의 건설·경영	
	자동차 고층 입체창고시설, 포장/가공/배송 업무와 관련한 창고 일체화 시설의 건설·경영	
	일반 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물 및 특수 약품의 저온배송 등 물류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제한 분야	곡물 수집, 곡물 및 면화 도매, 대형 농산물 도매 시장의 건설·경영	
금지 분야	우정회사, 우편물의 국내 특송업무	

자료 : Invest in China(<http://www.fdi.gov.cn>), 2015.7.28.

3. 시사점

- 중국의 특허경영을 포함한 PPP사업의 실시는 우리 물류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5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PPP 프로젝트 DB⁵⁾를 오픈하였으며, 공개된 프로젝트는 총 1,043개로 전체 사업규모는 1.97억 위안임
 - PPP 사업은 수리시설, 시정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 자원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항만 및 물류 관련 분야 프로젝트로는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산둥(山东)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충칭(重庆)시의 22개 사업이 포함됨
 - 각 프로젝트별로 소재 지역, 사업내용 및 규모, 정부 참여방식, 세부 PPP 방식, 담당자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 아울러 2015년 6월 1일 발표된 한중 FTA 협정문 제12장 투자 부문에서는 협정 대상국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보장, 협정 대상국 투자자의 투자활동 관련 최혜국 국민 대우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중투자 제약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⁶⁾

4) "중국, 수정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시행 임박", KMI국제물류위클리, 제136호, 2012.1.18.

5) 국가발전개혁위 PPP 프로젝트 DB(<http://tzt.ndrc.gov.cn/zttp/PPPxmkt/>).

6) "중국민관협력 (PPP) 지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 한중 Zine, In China Brief, Vol.293, 2015.6.29.

< 항만 등 물류분야 PPP 사업 리스트 >

No.	지역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투자금액 (억 원)	정부 참여방식	PPP 방식	담당자 & 연락처
1	장쑤 (江苏)	창저우시 덕성허 3급항로 정비 常州市德胜河三級航道整治	3급항로기준으로항로(21.54km)정비 19개 교량 개조 건설, 수문 1개 신설	50	지분합작	지분투자	周雪宜 86-519-85681101
2		창저우시 위안저우 만톤급 선석 및 자장부두 건설 常州市永安州万吨級泊位及夾江碼頭建設	창저우항위안저우항구5#、6#、7#선석 공정 및 자장부두 공정	15	지분합작	지분투자	周雪宜 86-519-85681101
3		홍저신항 洪澤新港	1천톤급 선석 12개 건설	3	특허경영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朱强 86-517-83945373
4		화이안항구 상허 작업구 淮安港区上河作业区	14개 선석 신설 연간 설계 처리능력 644만 톤	4.3	특허경영	BOT	朱强 86-517-83945373
5		렌윈강 엔웨이항 2호 부두 连云港燕尾港二号码头	3만톤급 선석 2개, 브릿지 3개	5.3	특허경영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姚春风 86-518-85861883
6		난통 종합보세구 일반부두 南通综合保税区通用码头	4~7만톤급 통용 부두 4개, 2천톤급 벌크부두 2개 및 부대 항구시설	25	지분합작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刘东 86-513-85215566
7		쉬저우항 피저우항구 피저우작업구 이전사업 徐州港邳州港区邳州作业区搬迁工程	2천톤급 선석 12개 건설(연간 설계처리능력 997만 톤), 부 대 화물야적장, 창고 및 철도 전용인입선 등 시설	20	지분합작	혼합소유제 회사 설립	周磊 86-516-83728524
8		빈하이항구 일반부두, 액체벌크 부두 滨海港区通用码头和液体散货码头	10만톤급 일반부두 1개 5만톤급 액체벌크부두 1개	30	지분합작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陈锋 86-515-86660520
9		다평항구 황해항무부두 大丰港区黄海港务码头	5만톤급 선석 3개	14.6	지분합작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陈锋 86-515-86660520
10		염청 관허 하구 5만톤급 항로 정비 盐城灌河口5万吨级航道整治	28.8km의 5만톤급 항로 정비	20	지분합작	PPP방식 (운영방식 제한없음)	陈锋 86-515-86660520
11	저장 (浙江)	자싱 내하항 하이닝항구 환청하(하이창) 작업구 공정 嘉兴内河海盐宁港区环城河(海盐)作业区工程	1단계 : 500톤급 다용도 선석 8개 신설, 항구 배후에 상응 하는 야적장, 도로, 부대시설 건설 2단계 : 건전화 야적장 2개, CY 2개, 공컨 야적장 2개, 일 반 창고 2개, CFS 1개 신설	7	각종 자원 매칭	BOO	沈月康 86-573-87236703
12		취저우 항운 양부항만사업 衢州航运洋埠项目	500톤급 선석 10개, 선석길이 547m 육지 면적 약 26.1만㎡	5	지분합작	미정	陈凯进 86-13905798260
13		황저산 석유환적 공정 黄泽山石油中转储运工程项目	30만톤급 원유(벵커유 포함) 선석 1개 신설(연간 설계 통 과능력 1,800만톤, 부두길이 470m) 8만톤급 유류제품 선석 1개(연간 설계 통과능력 820만톤, 부두길이 342m) 1만톤급 제품유 선석 2개(연간 설계 통과능력 260만톤, 부두길이 400m) 100만㎡ 원유 저장탱크, 51만㎡ 제품유 탱크 및 부대시설	26.692	지분합작	BOO	柴志宏 13905809881
14	산둥 (山东)	웨이팡항 동항구 및 임항물류원 潍坊港东港区及临港物流园	푸둥(蒲东) 연해 방조제 13.8km, 동서 양측 방파제 5천톤급 일반선석, 내만(Basin) 및 항로, 부대 임항물류원 1만톤급 이상 선석 및 항로	20	특허경영, 재정보조	ROT/BOOT/합 자	满珍妮 86-15169606977
15		웨이팡 임항물류원 潍坊港临港物流园	총면적 약 1,400헥타르(항만경제구의 시점으로 가까운 시 기에 중점 개발 예정)	13.8	특허경영, 재정보조	BOT/BOOT/합 자	港政科 86-536-8530159
16		웨이팡 서항구 5천톤급 항로 공정 潍坊港西港区5000吨级航道工程	5천톤급 일방 항로(25.35km) 건설 준설도 1,236㎡	12.74	특허경영, 재정보조	BOT/BOOT/합 자	吕全斌 86-18553612127
17	안후이 (安徽)	허페이 도로항 종합물류기지 合肥公路港综合物流基地	총면적 126,512㎡의 종합물류구 (정보센터, 종합서비스센터 44,672㎡, 배송창고 11,760㎡, 트레일러샷시 창고 11,040㎡, LCL 전용창고 23,040㎡, 콜 드체인 창고 36,000㎡)	4	합자	BOO	86-551-63756191
18		방부항 중심항구 창하이웨이 작업구 1기 공정 蚌埠港中心港区长淮卫作业区一期工程	2천톤급 선석 6개(연간 처리능력 190만 톤, 10만 TEU)	5.5	지분합작	기타	姚胜胜 86-552-3183521
19	장시 (江西)	난창항 수상서비스구 항목 南昌港水上服务区项目	벵커링 선석 1개, 가스 충전 선석 1개, 액커링 선석 1개 및 상응하는 선박 및 선원, 해운항만 행정서비스 시설	1.75	특허경영	BOO	陈明杰 86-13037243715
20		난창 야오완 종합부두 항목 南昌姚湾综合码头项目	5개 다용도 선석	2.1	특허경영	BOT	秦国根 86-18170953599
21		간저우항 시수이 종합화물운송부두 공정 赣州港水西综合货运码头工程	1천톤급 컨테이너선석 3개 1천톤급 간접화물 선석 2개	5.59	재정보조	BOT/BOO	胡超星 86-18970783358
22	중칭 (重庆)	귀위안항 건전화 및 철도작업구 果园港件散货及铁路作业区	귀위안항구 건전화 작업구, 벌크화물 작업구, 철도작업구	43	특허경영	합자회사 설립, 공동건설운영	梅宗林 86-18996526789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 PPP 프로젝트 DB(<http://tzs.ndrc.gov.cn/ztp/PPPxm/>), 2015.7.28.

- 비록 금번 규정은 체계적인 특허경영 관리 규정 제정을 목표로 하였지만 일부 조항들은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추후 중국의 PPP사업 투자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측(public sector)과의 사전 협의 및 그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대규모, 장기간인 경우 특허기간을 최대기간인 30년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또한 입지선정, 용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규정(제22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많은 관련 법 및 규정들이 후속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실정임

자료 : 凤凰网财经(finance.ifeng.com), 2014.6.21.

국가발전개혁위(www.ndrc.gov.cn), 2015.4.25.

"중국 민관협력 (PPP) 지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 2015.6.29.

Invest in China(www.fdi.gov.cn), 2015.7.28.

김은우 전문연구원 (☎ 051-797-4772, hisgrace@kmi.re.kr)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 **핵협상 타결직후 이란 물류시장으로 눈 돌리는 DP 월드**

- 세계 굴지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GTO)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DP 월드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관문항을 확보하기 노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측 카스피해 연안의 악타우(Aktau) 항에 대규모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음
 - 로이즈 리스트는 최근 DP 월드의 술탄 아흐메드-빈 술레이엠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 보도에 따르면, DP 월드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신실크로드경제벨트'(일명 '1대') 조성계획에 따라 확충될 카자흐스탄의 동서철도망을 이용한 이란항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취해졌음
 - * DP 월드는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의 하나로 2012년 말 현재 세계 4위를 기록 중인 세계굴지의 항만 운영사임
 - 아울러 DP 월드는 현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실사단을 구성해 상기 술레이엠 회장의 인솔하에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짐
- DP 월드의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최근 이란 핵개발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 직후 나온 신속한 대응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DP 월드는 일찍이 2013년 카자흐스탄 철도청과 협약을 맺고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악타우 항의 주요 화물 및 벌크 터미널 개발, 카자흐스탄의 신규 경제특구, 그리고 인근 내륙지역인 코르고스(Khorgos)의 드라이 도크 개발을 지원한 바 있음
 - * 코르고스 드라이도크는 '15년 7월 내 개장 예정
 - * 신 경제특구는 '16년 내 조성 완료 예정
 - 이와 같은 DP 월드측의 기술 지원 및 전문가 제공은 향후 중국의 신실크로드 사업이 진전되면서 악타우항을 경유하는 중국발 화물 물동량 증가 등 카스피해 연안국간 물류시장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짐
 - 카자흐스탄 악타우 항과 이란측 카스피해 연안 반다르 안잘리(Bandar Anzali) 항이 해운으로 연결될 경우 물류 거리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 기존 자동차에 의한 육로 수송의 경우 최소 24시간 소요되며 철도망은 미개발
 - * 악타우 항과 반다르 안잘리 항이 해운으로 직접 연결 시 운송시간 단축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이란 핵에 대한 새 국제협정으로 대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주변국과 이란간 국제 무역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DP 월드의 술레이엠 회장은 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의 이란 방문에 대해서는 "우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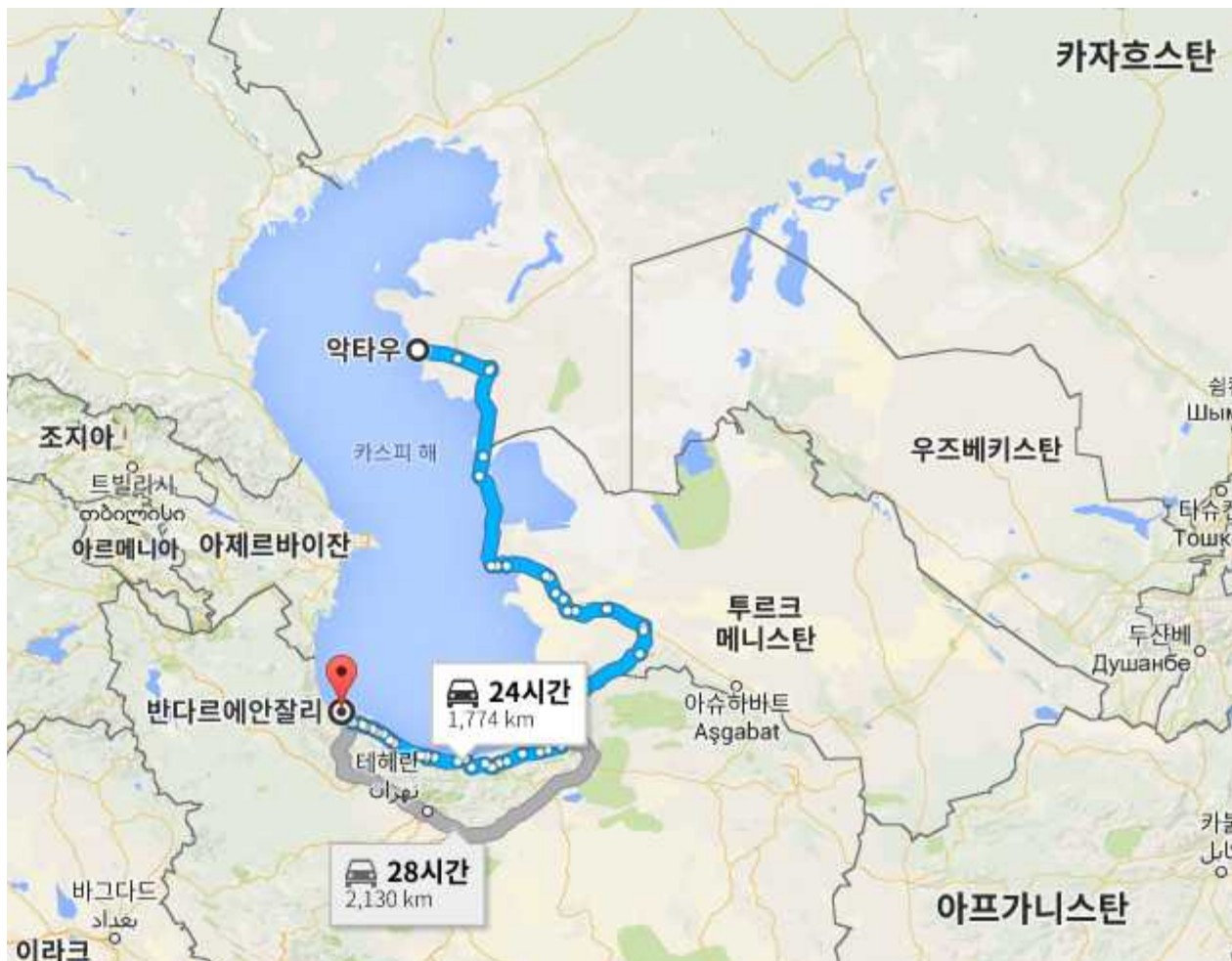
일치"라며 투자결정과 이란 핵협상 타결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음

- DP 월드는 이란 진출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북방 맞은편에 위치한 이란의 퀘심(Queshm) 섬과 파키스탄 가까이 위치한 차바하르(Chabahar) 항에 대한 개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 www.lloydslist.com, 2015.7.22.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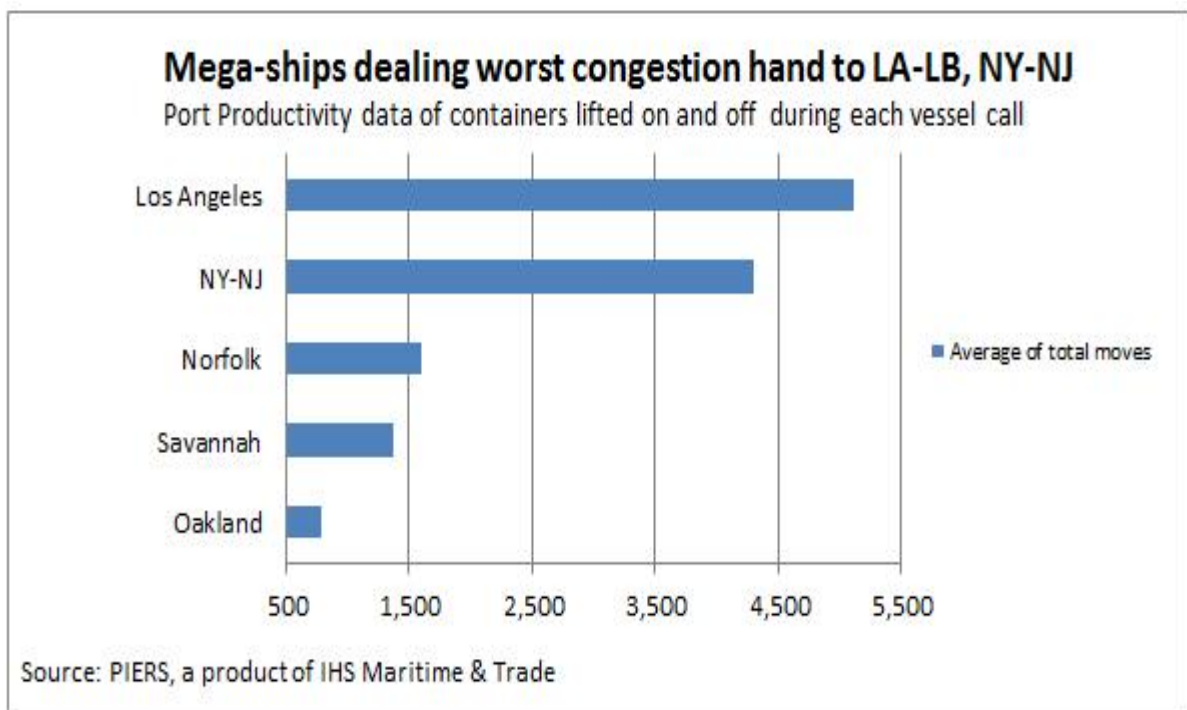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악타우항과 이란 반다르 안잘리항 >



자료 : map.google.com

□ 미국 LA-LB·NY-NJ항, 메가선박(Mega-Ship) 입항으로 터미널 혼잡가중

- 미국 LA-LB항과 NY-NJ항이 메가선박의 입항으로 체선·체화 문제에 직면함
 - 미국 내 주요항만인 LA-LB항과 NY-NJ항은 메가선박의 입항으로 터미널 내와 항만 진출입 게이트 주변 혼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PIERs⁷⁾에서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항만을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당 처리해야하는 평균 컨테이너의 수는 LA-LB항은 5,108개, NY-NJ항은 4,295개로 미국 내 항만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LA-LB항과 NY-NJ항의 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높은 이유는 환적물량 보다는 수출입 물량이 많기 때문임
 - 아시아와 유럽 지역 중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높은 항만의 경우에도 입항 선박당 평균 2,400~3,8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LA-LB항과 NY-NJ항의 55~75%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아시아-유럽 항로를 운항하는 18,000TEU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에도 항만 입항시 2,000~3,000개의 컨테이너를 양적하하는 수준임

7) JOC.com의 자매회사



- LA-LB항과 NY-NJ항은 항만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역장비 대형화와 항만 자동화를 고려하고 있음
 - 향후 10,000~22,000TEU급의 메가선박들이 이들 항만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선박이 수송해온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슈퍼 포스트-파나막스 크레인 및 수심 확보 등 메가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 항만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항만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항만시설 자동화에 투입될 예산은 2억 달러로 소요예산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당국 관계자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부족한 항만 터미널 부지 문제도 향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joc.com, 2015.7.1.

이건우 전문연구원 (☎ 051-797-4772, hisgrace@kmi.re.kr)

□ DHL, 중국 전자상거래 확대 계획

-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상하이 Jiuting(九亭) 지역에 신규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음
- 이 계획은 지난 7월 16~24일의 FC 바이에른 뮌헨(Bayern Munich)의 Audi Summer Tour의 중국지역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음
 - DHL과 FC 바이에른 뮌헨은 시장 확대 전략 관련하여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DHL은 FC 바이에른 뮌헨의 국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물류 분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규 물류센터는 중국 북부와 남부지역 화물들의 중간기착지(drop-off)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완공시 중국 북부와 남부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신규 물류센터의 건립으로 중국 동부와 북부 지역의 생산지에서 상하이 중심부까지 운송시간은 최대 3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DHL eCommerce의 Thomas Kipp 대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은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의 거래량이 작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과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신규 물류센터는 중국 전역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95%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화물 및 배송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은 물론, 중국의 지역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현재 DHL 전자상거래는 홍콩의 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DHL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은 중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7.22.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Menlo, 동유럽 Freight Brokerage 서비스 확장

- 콘웨이(Con-way)사의 자회사인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Menlo Worldwide Logistics)사는 유럽에 3PL, 보관 및 SCM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로 화물중개업(Menlo Freight Brokerage)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두 번째 사무소를 프라하에 설립함
 - 본 두 번째 사무소는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멘로 화물중개업 서비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힘
 - 또한 프라하에 설립되는 본 두 번째 사무소는 기존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사의 유럽 본부와 연계하며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및 러시아에 상기 서비스를 제공함
-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 유럽의 코트 블로머스(Koert Bloemers) 사장은 프라하에 설립되는 신규 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프라하에 신규로 설립되는 사무소는 유럽에서의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사의 영향력을 넓히며 동유럽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또한 본 신규 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제공되던 기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더하여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사의 토니 건(Tony Gunn) 이사(Managing Director)는 유럽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사는 유럽 물류의 전문가 집단과 상호 연계하고 모회사인 콘웨이사의 경험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본 서비스에 적용하여 유럽의 해운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상기 멘로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사의 화물중개업 서비스는 유럽에서 제공되던 기존의 운송업보다 더욱 유연하며 더 다양하고 많은 물류기업군과 함께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밝힘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5.7.21, www.logasiamag.com, 2015.7.23.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o@kmi.re.kr)

물류시장동향

□ UPS, 중국-유럽간 LCL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물류회사인 UPS(United Parcel Service)는 중국-유럽간 철송을 이용한 복합 LCL(Less-than-Container Load) 서비스를 시작함
 - 이 서비스는 중국 허난성의 Zhengzhou에서부터 독일 함부르크까지 연결됨
 - 작년 UPS는 중국-유럽간 FCL(Full Container Load)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FCL 철송 서비스는 같은 구간 항공운송에 비해 비용이 65% 절감되며, 해송보다 시간은 40% 단축되는 이점이 있음
 - 2014년 기준 중국-유럽간의 교역량은 약 6,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0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UPS의 LCL 철송 서비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성장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운송 서비스이며, UPS는 고객 만족을 위해 철송 외에도 항공, 트럭킹, 선박 등을 이용한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자료 : railandroad.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7.15.

김은미 연구원 (☎ 051-797-4778, usea1004@kmi.re.kr)

□ 러 태평양 함대 소속 “아드미랄 네벨스코이”함정, 사할린 지역 첫 운항

- 7월 24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인 “아드미랄 네벨스코이”가 바니노 항과 사할린에 위치한 홈스크 항 간 첫 운항을 개시함
 - 첫 운항시간은 약 15시간 이었으며 바니노 - 홈스크 간 3회 운항할 계획임
- 주 운항목적은 바니노-사할린 간 승객 및 화물수송이며 1회에 약 190명의 승객 수송이 가능함
 - 6월 말부터 7월까지 사할린에 있는 어업종사자들이 극동지역에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시기임
 - 최근 태풍으로 인해 사할린과 바니노 간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이 구간에 운항하는 선박 2척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드미랄 네벨스코이” 함정이 투입되는 것임

자료 : www.portnews.ru, 2015.7.24.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i@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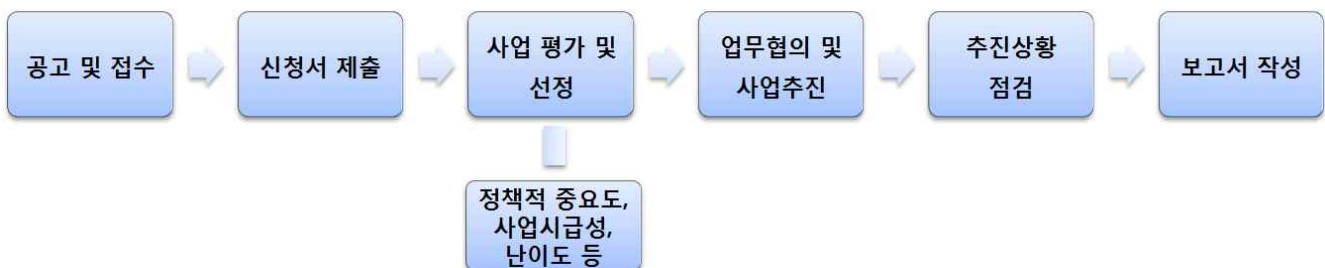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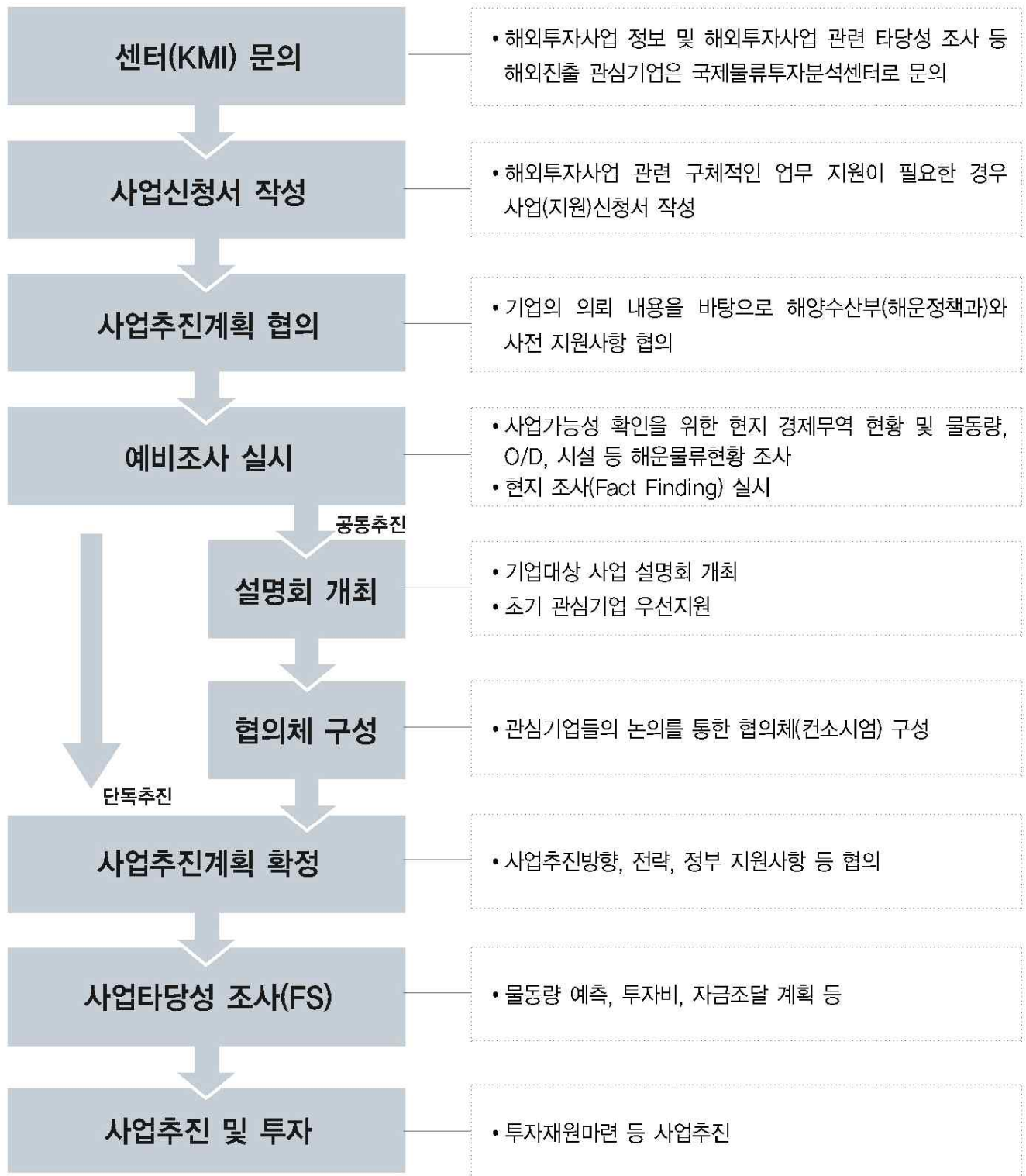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